

베트남 식품 라벨링 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가. 일반조항

□ 적용 범위

-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들의 라벨에 대한 관리 및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한다.
- 다음 물건들은 이 법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동산
 -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상품 또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국경 게이트에서 전송하는 상품
 - 선물, 기부금, 출국·입국하는 사람들의 수하물 이동자산.
 -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 시장의 발전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추가 제안한 것

□ 적용 대상

- 라벨링 법령은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 및 상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된다.

□ 라벨링 의무사항

-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은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라벨 필요 없는 상품: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신선식품으로 포장없이 가공하게 되는 식품
 - 소비자와 협정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포장 없는 연료, 원재료 (농산물, 수산물, 임산), 건축 재료(벽돌, 타일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흙, 유발, 상업 혼합 콘크리트), 스크랩 (생산, 판매).
- 베트남 상품을 수출입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 판매 계약에 의해 상품의 라벨링 요구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 법률 및 수입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라벨링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라벨에 모든 필수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상품의 라벨에 내용, 상품명,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의 이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해야 한다.
 - 다른 요구 내용은 상품에 첨부된 서류에 기록하고, 상품의 라벨에 그 내용을 적는 장소도 기입해야 한다.

□ 라벨링 크기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는 상품의 치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법령의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전체 필수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하고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벨링 형태

- 상품의 라벨에 기록된 문자의 색깔, 숫자, 그림, 사진, 손짓, 기호가 뚜렷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들에게 문자, 숫자의 색깔이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해야 한다.

□ 라벨링 표기언어

- 상품의 라벨에 필수 내용들은 베트남어로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제 4 조에 규정된 경우 제외.
- 이 조항의 1항에 있는 규정 외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상품의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 가능하다. 외국어 표시내용은 베트남어 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치수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의 치수보다 더 크면 안 된다.
-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으로 라벨에서 베트남어로 필수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는 별도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오리지널 라벨을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어 표시내용은 오리지널 라벨링 내용과 상응해야 한다.
- 다음 내용에서 오리지널 라틴 알파벳이 있는 외국어로 쓸 수 있음:
 - 인체용 의약품의 베트남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나 과학 이름

- 국제 이름이나 화학물질의 화학공식, 구성공식 첨부된 과학 이름
-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 이름이나 성분, 양적 성분의 과학 이름
- 외국 제조업체, 상품 프랜차이즈의 이름 및 주소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성실성, 뚜렷함,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 제조, 가공, 포장해서 유통하는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수출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존 라벨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령의 제9조 3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개인 및 단체는 기존 라벨을 잘 보관하고, 유통하기 전에 부가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

나.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

□ 상품 라벨링에 대한 위반 처리 재판권

- 인민 경찰 기관, 항구에 설치되는 세관사무소, 시장관리, 상품의 품질관리, 전문화된 검찰 관 및 기타기관은 할당하게 되는 직능, 책임, 권한 범위 중에서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행위를 탐지할 시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

□ 생산유통 및 수출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상품의 라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 단체는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 국가 관리기관 소속에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해서 상품의 라벨에 대해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과 형사 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의 규칙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상품의 라벨에다가 다음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상품의 이름
 -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
 - 상품의 원산지
- 이 조항의 1번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상품의 특징에 따라 이 법령의 제12조에 반드시 명시된 내용, 법률 문서 및 관련된 전공 법령 규정에 표시해야 된다.

□ 상품의 특징에 따라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곡물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식품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성분이나 중량 성분
 - 위생,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사용법, 보관 안내
- 음료수(술 제외)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성분이나 중량 성분
 - 위생, 안전에 대한 경보 및 안내
 - 사용법, 보관 안내

○ 술

- 중량
- 에타놀 (etanol) 함량
- 보관 안내 (와인 경우)

○ 담배

- 중량
- 제조 일자
- 위생, 건강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식품의 첨가물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중량 성분
- 사용법, 보관 안내

○ 사료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중량 성분
- 사용법, 보관 안내

□ 상품명

- 생산 및 사업 개인, 단체가 스스로 라벨에서 적는 product name을 정하고, 상품의 효능 및 특성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product name을 정확하게 지어야 한다.
- 상품 성분에 있는 물질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품 이름이나 상품 이름의 일부분을 짓는 경우에는 그 성분의 용량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 법령의 제 18 조 4목에서 지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이름 및 주소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를 적는 것은 다음 자세한 경우에

따라 지정한다.

-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 : 그 상품을 생산하는 단체,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해 수입하는 상품 : 생산하는 단체, 개인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수입 단체나 수입 개인의 이름 및 주소
- 베트남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 상인의 직접 판매 대리점인 개인, 단체의 상품은 생산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그 상품을 판매 대리점인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 다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거나 허락을 받게 된 상품이라면 이 조항의 1,2와 3목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거나 허락하는 개인, 단체의 이름하고 주소를 추가해야 한다.

□ 상품의 중량

- 측정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 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시한다.
- 수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숫자로 써야 한다.
- 동일 포장에 여러 상품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단위 별로 중량 및 상품 총 단위의 중량을 써야 한다. 또한 상품 단위별로 중량 및 상품 단위의 수량을 써야 한다.
- 상품의 중량을 쓰는 방법은 이 법령의 부록 I에 규정을 하게 되다.

□ 제조일자, 유통기간, 보관기간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기한은 양력 연도에 따라 일, 월, 년으로 순서대로 쓴다.
 -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 가능하다. 그리고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같은 줄로 표시해야 한다.
 - 생산 시간을 월(달)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월 및 년의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 생산 시간을 연으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숫자 4 개를 표시해야 한다.
- 이 법령에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및 보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품의 라벨은 이 조항의 1목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작성하게 되었으면 상품의 유통기한이나 보관기한은 제조 일자부터 기간으로 표시 가능하다.
- 이 조항에 1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시간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 상품이라면 이 법령의 부록II에서 지정한다.

□ 상품의 원산지

- 원산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된다. “어디에서 생산” 이나 “어디에서 제조” 나 “원산지” 와 상품의 생산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기록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록한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기록할 필요없다.

□ 성분, 중량성분

-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원재료 및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완제품에서 존재하는 첨가물을 의미한다. 또한 변경된 원자재의 형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품에 관심을 끌기 위해 라벨에 나와 있는 원재료 성분의 이름을 표시할 시 그 원재료 성분의 중량도 표시해야 한다.
- 중량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성분 및 성분별로 하나씩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상품의 특성 및 상태에 따라 표시된 중량 성분은 상품 한 단위에서 그 성분의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혹은 다음 비율 중 하나에 의해 표시: 용량 및 체적; 용량의 퍼센트; 체적의 퍼센트
- 일부 상품 종류에게 성분, 중량 성분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성분은 첨가물이라면 첨가물 그룹 이름, 첨가물 이름, 국제 코드 (있는 경우)를 써야 한다. 또는 첨가물은 감미제, 색소가 포함되며, 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하는 것 외에 “자연” 물질이나 “합성” 물질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 기원의 제품, probiotics 생물 제품, 동물용 의약품, 식물보호 의약품이라면 활성 화합물의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성분 및 첨가물을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 금속 가구, 사용 가치를 결정하는 메인 재료로 만든 도구라면 메인 원재료 성분의 이름 및 상품명을 표시해야 하고 성분 및 양적 성분으로 표시할 필요 없음.
- 상품의 성분, 중량 성분은 이 조항의 3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경우에 이 법령의 부록III에서 지정하게 된다.

□ 기술정보, 위생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 장비에 기본 기술정보를 써야 한다.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생물 수의사 제품, 식물 보고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 의약품의 지정, 사용법, 금기(있는 경우)
 - 등록번호, 생산 일괄번호, 조제형태, 포장규격
 - 현재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종류별로 주요 증상
- 특별한 방부제가 있는 인간, 동물, 환경에 유독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리스트에 있는 사용량을 지정하게 된 상품이라면 상품의 성분이나 혼합 성분에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증명서에 방부제의 이름을 추가해야 한다.
- 상품이나 상품의 성분은 방사선에 노출되었거나 유전자 변형기술을 적용한 것인 경우에는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 상품의 기술명세와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안내 및 경고는 이 조항에서 2번 및 3번의 규정보다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 법령의 부록 IV에서 지정하게 된다.

□ 라벨링에 표시하는 기타 내용

- 상품의 라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는 라벨에다가 기타 내용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내용은 법을 위반하면 아니되고 정확하게 상품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서 쓰는 필수 내용과 다르거나 위조하면 아니된다.

			
수입식품 라벨링	유제품 영양표시	음료수 영양표시	스낵류 영양표시

가. 웹사이트

1. www.customs.gov.vn (베트남관세총국)
2. www.moh.gov.vn (보건위생부)
3. www.omard.gov.vn (농업농촌개발부)
4. www.vfa.gov.vn (식품안전위생검역원)
5. www.cucthuy.gov.vn (수의검역원)
6. www.most.gov.vn (과학기술부)

나. 관련법규

1. 관세청법: 42/2005/QH11 (2005.6.14)
2. 화물의 통관철자 안내 시행규칙: 194/2010/TT-BTC (2010.12.6)
3. 원산지 규정: 19/2006/NĐ-CP (2006.2.20)
4. 수입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23/2007/QĐ-BYT (2007.3.29)
5. 수입동물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25/2010/TT-BNNPTNT (2010.4.8)
6. 수입식물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13/2011/TT-BNNPTNT (2011.3.16)
7. (신선 농산물) 수입 식물 병충해 위험 검역 48/2007/QĐ-BNN (2007.5.29)
8. 식품품질기준(성분분석): 2027/2001/QĐ-BYT (2001.5.30)
9. 라벨링 시행령: 89/2006/NĐ-CP (2006.8.30.)

부록1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대한 통지서

- 발급기관: 보건부
- 발급일자: 2014.5.11

보건부
식품안전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1114TB-ATTP

하노이, 2014년 5월 11일

보건부의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대한

식품 상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국은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별첨파일이 있음)
 -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 식품안전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양식
2. 이 통지서의 1호에 제시한 문서양식은 14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통지서의 1호에 제시한 14년 6월 9일전 발급한 인증서 양식은 해당 인정서의 효력 기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식품안전국은 관련기관, 식품 취급 단체 또는 개인, 소비자 등이 이해하게 통보한다.

수신처:

- Nguyen Thanh Long 차관
- 식품 취급 단체 또는 개인
- 관세총국 등

국장

Tran Quang Trung

부록1-1

보건부
식품안전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ATTP-CNCB

하노이, 20 년 월 일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과 같은 대상의 규정적합 공포를 확인한다.

단체, 개인명:

주소:

연락처:

팩스:

Email:

상품대상:

.....상품은 베트남 보건부의 번.....베트남기준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인증서는 상기 업체의 서약을 인정하며, 상당 기술기준을 접합한 상품 인증가치가 없다.

상기 업체는 공포한 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기적으로,년마다 단체 또는 개인은 기준 적합 공포를 등록해야 한다.

수신처:

국장

- 단체 또는 개인

- 내부 저장

부록1-2

보건부
식품안전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ATTP-CNCB

하노이, 20 년 월 일

식품안전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과 같은 대상의 식품안전 기준 적합 공포를 확인한다.

단체, 개인명:

주소:

연락처:

팩스:

Email:

상품대상:

.....상품은 식품안전 기준에 적합한 생산되기 때문이다.

단체 또는 개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상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포한
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기적으로,년마다 단체 또는 개인은 식품안전 기준 적합 공포를 등록해야
한다.

수신처:

국장

- 단체 또는 개인
- 내부 저장

부록2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수입 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
번호:.....

수신:.....
수입업체/수입개인업자:.....
주소:.....전화:.....

저희 회사의 수입품목의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품목명:.....
과학명:.....
종량:.....
수량:.....
포장방식:.....
생산구역:.....
수출국:.....
운송수단:.....
수입국:.....
사용장소:.....
수입시간:.....
첨부 서류:.....

접수번호:...../년....월....일
접수자

년....월.....일
신청자

부록3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PRA 분석하기 위한 필수 관련 서류

제출할 서류는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수출국에서 사용이 효력이 있는
서류여야 한다.

1. 식물 및 식물 제품

- 1.1 과학명:
- 1.2 일반명:
- 1.3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 또는 병충해를 극복할 수 없는 종자
- 1.4 이 품목을 수입한 적이 있는 나라:

2. 생산지

- 2.1 생산 지역: ...동/....구..../성(시)
- 2.2 지도에 생산 지역 위치(국가):
- 2.3 수출 능력 (ton/년)

3 재배법

- 3.1 일반적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병충해 검역 관리
- 3.2 전염되지 않은 지역 정보
- 3.3 수확 기간 및 수확 방법
- 3.4 지방에서(수출국) 식물 보호-검역 방법

4 병충해 List

- 4.1 과학명호
- 4.2 분류 위치
- 4.3 기타명호
- 4.4 일반명호
- 4.5 병충해에 걸린 종자
- 4.6 병충해에 걸린 나무 부분

- 4.7 병충해 증상
- 4.8 분배
- 4.9 병충해 상태 (보편적이거나 적절히 나온 병충해)
- 4.10 관리 방법
 - 4.10.1 재배 (병충해에 걸린 나무뿌리를 뽑거나 밭에 살충제로 청소하거나 곤충을 잡는 기구를 쓰거나 윤작...)
 - 4.10.2 생물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를 고르거나 한 철에 농작을 하지 않거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물적 방법 사용...)
 - 4.10.3 물리
 - 4.10.4 화학 (농약 종류, 사용방법, 시간, 복용...)
- 4.11 병충해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한 참고 자료
- 4.12 위에 대한 관련한 자료

- 5. 포장
 - 5.1 포장법
 - 5.2 검사 방법 및 검사 비율
 - 5.3 수확 이후 처리 방법
 - 5.4 보관 창고의 안전도 및 조건

- 6. 수출 프로그램
 - 6.1 사업 파트너
 - 6.2 적용되어 있는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절차 (기준으로 하거나 특별한 경우, 관련한 보충 서류)

- 7. 관련한 자료 사본

부록4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병충해 위험성에 대한 검역기간 (서류심사) ■

순서	식물 품목	기간
1	나무 종자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이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2	과실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3	생물적인 병충해 예방 약물	30일
4	기타 수입 생식물	30일
5.	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	60일

부록5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병충해 위험성에 대한 검역기간 (서류심사) ■

순서	식물 품목	기간
1	나무 종자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2	과실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3	생물적인 병충해 예방 약물	30일
4	기타 수입 생식물	30일
5.	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	60일

부록6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농업농촌개발부
식물검역원

번호:...BVTV-KD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수입허가증

베트남의 식물 검역 및 식물 보호에 대한 법과 아래와 같은 서류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의 수입허가 발급 신청서:
 - 검역 결과 보고 번호:....., 년.....월.....일:
- 식물보호원은 아래와 같은 수입업체 또는 수입 개인업자가 베트남에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
- 상호:.....
- 주소:.....
- 수출국:.....

검역을 받은 품목:
.....
.....
.....

과학명:.....
.....

- 아래와 같은 식물검역절차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 1/ 수출국에서 적용된 처리 방법:
- 살충: 살충제:..... 복용량:..... 시간:.....
 - 방사선 처리: 처리 근원:..... 정량:..... 시간:.....
 - 베트남의 조정해야 하는 병충이 없는 구역에서 생산되다: 유 무
- (베트남의 금지 및 관리된 병충인지 검사하는 것임)
- 기타 방법:

2/ 수출국에서 발급된 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첨부:

3/ 이 수입식품품목은 아래와 같은 지정된 해관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
.....
.....

식물 검역 수속은에서 완료해야 한다.

4/ 운반 일정:.....

5/ 사용 장소:.....

6/ 지정된 장소에 도착 시 수입업체나 수입개인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수입 이후 지속적 검사하기 위하여 재배할 지방의 식물검역원에 통보한다.

수입 이후 식물검역센터에 통보한다.

식물검역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생산된다.

기타 식물검역 요청:.....

.....
.....
.....

7/ 이 수입허가증은년.....월.....일까지 유효가 있다.

Hanoi,년.....월.....일
식물검역원 장관
(sign and stamp)